

# 2023 예술지원 매칭펀드 변경사항 안내

## [운영규정]

| 내용    | 2022년  | 2023년   |
|-------|--|---|
| 중복 지원 | <p>타 기관 매칭펀드 사업과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연도에 타 지역 메세나단체 및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운영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펀드교부금 재원의 출처가 다른 경우는 예외</li> </ul> | <p>타 기관 매칭펀드 사업과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연도에 타 지역 메세나단체 및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운영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수혜를 받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li> </ul> <p>① 펀드교부금 재원의 출처가 국고보조금이 아닌 경우(지자체 도비, 시비)<br/>② 지원 신청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경우<br/>③ 매칭 기업이 다른 경우</p> |
|       | <p>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지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준, 단체명이 다른 경우 각 단체 별 지원 신청 가능</li> </ul>  | <p>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지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준,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신청 가능</li> <li>- 지원 선정 후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li> </ul>   |

| 내용             | 2022년   | 2023년  |
|----------------|---|--|
| 지원금<br>입금 및 사용 | <p>기업지원금 입금 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 없음</li> </ul>  | <p>기업지원금 입금 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계좌로 기업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li> </ul>  |
|                | <p>매칭펀드 수혜 단체 간 펀드교부금 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li> </ul>  | <p>매칭펀드 수혜 단체 간 펀드교부금 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 단체 간 지급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지원금 또는 단체 자부담 예산으로 지출(펀드교부금 사용 불가)</li> </ul>   |
|                | <p>개인 사례비/대표자 사례비 지출 (출연료, 연주료, 기획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사례비 : 지출금액 한도 없음</li> <li>- 대표자 사례비 : 전체 예산의 20% 한도 내 지출 가능</li> </ul> | <p>개인 사례비/대표자 사례비 지출 (출연료, 연주료, 기획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사례비) 펀드교부금 : 총액의 50% 한도 내 지출</li> <li>- (개인 사례비) 기업지원금 : 지출금액 한도 없음</li> <li>- <b>대표자 사례비 : 지출 불가</b></li> </ul> |

## [지원규모]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
|      | 기업지원금 (상한액 없음) | 문예기금 매칭지원 (최대 1:1 비율) | 기업지원금 (상한액 없음) | 문예기금 매칭지원 (최대 1:1 비율)                     |
| 중소기업 | 최소 500만원~      | 최소 500만원 ~최대 2,000만원  | 최소 500만원~      | 최소 500만원 ~최대 2,000만원<br>*대기업은 최대 1:0.5 비율 |
| 중견기업 | 최소 1,000만원~    |                       |                |   |
| 대기업  | 최소 1,500만원~    |                       | 최소 1,000만원~    |   |

- ▶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펀드교부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 대기업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1 적용

사업문의: A&B팀 김지훈 매니저(02-761-0858)

# 2023 매칭펀드 사업 회계검증수수료 변경 안내

[회계검증수수료 - 2023년도 개정]

| 사업규모(펀드교부금/기업지원금 개별 편성) | 수수료      |
|-------------------------|----------|
| 7백만원 미만                 | 187,000원 |
| 1천 5백만원 미만              | 226,000원 |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302,000원 |
|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 360,000원 |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390,000원 |
|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 541,000원 |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예시

| 구분    | 지원 금액   | 검증수수료    | 비고                        |
|-------|---------|----------|---------------------------|
| 펀드교부금 | 1천 5백만원 | 302,000원 | 기업지원금 예산 내<br>662,000원 편성 |
| 기업지원금 | 3천만원    | 360,000원 |                           |

# 2023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산편성 가이드

## ■ 예산편성 기본원칙

| 구분                             | 내용   |
|--------------------------------|--|
| 회계연도 내 소진                      | · 회계연도 내 모두 소진 원칙<br>·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 불가   |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 사업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필수<br>·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등 검토 필수                              |
|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 펀드교부금 : 연출, 무대제작 등 순수예술 활동비로만 지출 가능<br>· 기업지원금 : 순수예술 활동비, 단체 운영비,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지출 가능 |
| 예술단체 운영비 집행<br>(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 · 펀드교부금 : 예술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br>· 기업지원금 : 총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 가능                   |
| 교통비 집행                         | · 신청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이동에 한해 지출 가능  |
| 사례비 집행                         | · 펀드교부금 :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 가능<br>· 기업지원금 : 편성/지출 한도 제한 없음                   |
| 기업 교류협력 프로그램                   | · 기업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과의 순수한 협력 프로그램에 지출 가능  |
| 대표자 사례비                        | · 편성/지출 불가   |

## ■ 예산편성 불가항목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사업준비 또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경비 및 기념품 구입비
3. 행사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4.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5. 경연대회 상금 성격의 비용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7. 단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대표자가 실제 연출, 기획 등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지출 불가)

※ 위 항목 중 협회가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함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1. 유흥업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2. 위생업종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3.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지원금 편성/집행 유의사항

- 회계연도 준수 원칙
  - 지원금은 회계연도(2023년)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메세나협회와 체결한 성실이행약정서 상의 예산계획 항목과 일치하도록 사용
  - 회계연도를 미준수하여 지원금 집행 시, 용도와 상관없이 지원금 전액 환수
    - ※ 단, 협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사업 계획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업 및 예산변경신청서' 제출 및 한국메세나협회 담당자의 승인 필수
  
- 계좌이체 혹은 지원금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서만 집행
  - 펀드교부금 :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펀드교부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서만 집행
  - 기업지원금 : 기업지원금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혹은 전용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서만 집행
    - ※ 현금 인출 및 사용은 불가하며 지원금과 단체 자부담 예산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펀드교부금과 기업지원금 간 계좌이체 불가
    - ※ 카드 영수증 제출 시 세부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필수 첨부
  
- 지원금 사전 집행 및 사후정산 금지
  -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 가능
  - 지원금 교부 이전의 집행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해당 금액은 지원금으로 대체 및 보전 불가능
  - 지원금을 일괄 인출을 통한 집행 금지
  
- 이자 / 이체수수료 / 집행잔액 관리
  - 이체 수수료, 가산세는 지원금에서 사용불가하며 자기부담금으로 집행
    - ※ 단, 사전에 예산계획에 반영한 해외송금수수료의 경우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
  - 기업지원금 및 펀드교부금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사업비로 활용 불가
  
-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천세 이행 의무
  - 출연료, 연출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사례비 지급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위택스에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수
  
- 사례비 지급 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 인건비 및 사례비 지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계약서 양식 활용 필수
  - 계약서 다운로드 경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사례비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 2020.12.10.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적용
    - ※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른 사례비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납부 필수
  - 고용보험은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중 일정 수준의 월 평균보수 혹은 사례비를 지급받는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됨
  
- 서류 보관의 의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필수

관련 문의: 한국메세나협회 A&B팀 김지훈 매니저(02-761-0858)